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새빛학원(안산대학교)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감사결과 학교법인 새빛학원(안산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"
3. 학교 관련				"
계				

붙임 : 1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0 년 4 월 14 일

학교법인 새빛학원

감 사 이 승 현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311 호)

감 사 최 기 호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20 년 4 월 14 일

학교법인 새빛학원

이 사 장 임 승 홍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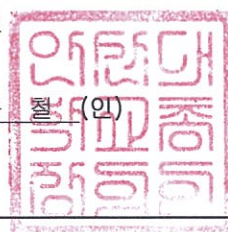


피감사 기관장

2020 년 4 월 14 일

안산 대학교

총 장 안 규 철 (인)

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새빛학원 (안산대학교, 인천기독병원)의 2019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0년 4월 14일

학교법인 새빛학원

감사 이승현 

감사 최기호 

피감사자 (임회인)

직명 법인사무국장

성명 문용국 